

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(제5조 관련)

구분	적용대상 공무원
별표 3	별표 3의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,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, 일반군무원,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, 재외공무원(재외무관은 제외한다)
별표 3의2	전문경력관, 전문군무경력관
별표 4	교정·보호·검찰·마약수사·출입국관리·철도경찰직 공무원(4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정·보호·검찰·마약수사·출입국관리·철도경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),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,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,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공무원(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), 국가정보원 직원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 직원,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·등기사무직·조사사무직·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,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·행정직·법정경위직 공무원,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(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)
별표 5	연구직공무원, 국가정보원 전문관
별표 6	지도직공무원
별표 8	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
별표 10	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경찰대학생,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, 소방간부 후보생,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
별표 11	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,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(교육부, 국가교육위원회, 국사편찬위원회, 중앙교육연수원, 국립국제교육원, 교원소청심사위원회, 국립특수교육원,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), 교육장,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
별표 12	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원,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·국립외교원·국방대학교·사법연수원·경찰대학·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·부교수·조교수 및 조교
별표 13	군인, 사관생도, 사관후보생, 입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
별표 14	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